

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

목적물 소재지 관할 집행관 신청 · 가상 작성례

채권자	[가상] 김가온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로 00
채무자	[가상] 이도윤 서울특별시 ○○구 △△로 00
집행권원	○○지방법원 2026가단00000 대여금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
집행채권액	금 30,000,000원
목적물 소재장소	[가상] 서울특별시 ○○구 △△로 00, 3층 채무자 운영 사무실

집행목적 및 위임취지

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·매각하여 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위임합니다.

현장 참고사항

사무실에 책상, 의자 및 사무기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 구체적인 압류 여부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·외관, 소유관계와 압류금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

2026. 8. 10.

신청인 채권자 김가온 (서명 또는 날인)

목적물 소재지 관할 ○○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귀중

별지 · 집행장소와 준비자료

가상 작성례의 별지

방문 장소	서울특별시 ○○구 △△로 00, ○○빌딩 3층 (가상 주소)
출입 안내	평일 09:00~18:00 / 건물 관리실 확인 필요 (가상 설정)
점유관계	채무자 운영 사무실로 파악되나 집행관이 현장에서 확인
참고 물건	책상·의자·사무기기 등 / 특정 물건의 압류를 보장하지 않음

첨부서류

-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1부
- 송달증명원 1부
- 목적물 소재장소와 채무자 점유를 확인할 참고자료
- 집행관 사무소가 안내하는 수수료·출장비 등 납부자료

채권자가 임의로 출입하거나 물건을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. 생활필수품·직업상 필수도구·법정 압류금지 현금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고,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별도 분쟁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.